

---

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 
**2020년도 투명성 보고서**

---

2021. 1. 28.

주식회사 펄스위트
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 
제64조의5(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)에 따라 정보통신  
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 
투명성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2021년 1월 28일

#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2020년도 투명성 보고서

## 1. 일반현황('20년 12월말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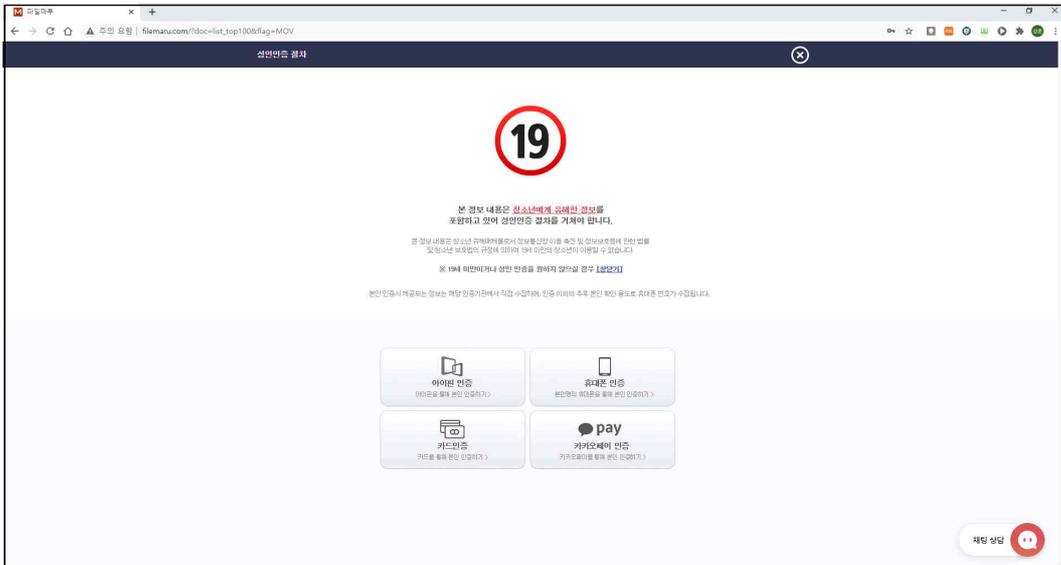
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	주식회사 펄스위트
대 표 자	대표이사 고상욱
정보통신 주요서비스 / 3개월 일일평균이용자	파일마루 / 약 4만5천명
정보통신서비스부문 연평균 매출액	약 55억원
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	총괄 송후인 부장

## 2.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

-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위한 시스템(특징기반 구축 운영) : 2020 ~ 현재
  - ▶ 필터링사와 계약하여 특징기반 필터링 시스템 적용하여 운영 중
- 별첨1.펄스위트\_와이즈월\_MISO이용계약서사본.pdf**
- 별첨2.펄스위트\_와이즈월\_모바일필터링이용계약서사본.pdf**
  
-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절차 마련 (2020년도)
  - ▶ 이용자보호 계획서 內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절차 신설 (2020년 12월 10일)
- 별첨3.이용자보호 계획서\_불법촬영물등 신고 접수 및 처리 계획 신설.hwp**
  
- 불법음란물 및 불법촬영물 관련 금치어 등록 : 2020 ~ 현재
  - ▶ 검색 금치어 등록을 통한 불법음란물 및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
- 별첨4.불법음란물 및 불법촬영물 관련 전체 금치어 리스트(PC,Mobile).xlsx**
  
-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책임자 지정 및 고객 상담센터 운영 : 2020 ~ 현재
  - ▶ 운영팀 전담부서 및 고객센터(1522-0576)
  - ▶ 1:1 상담게시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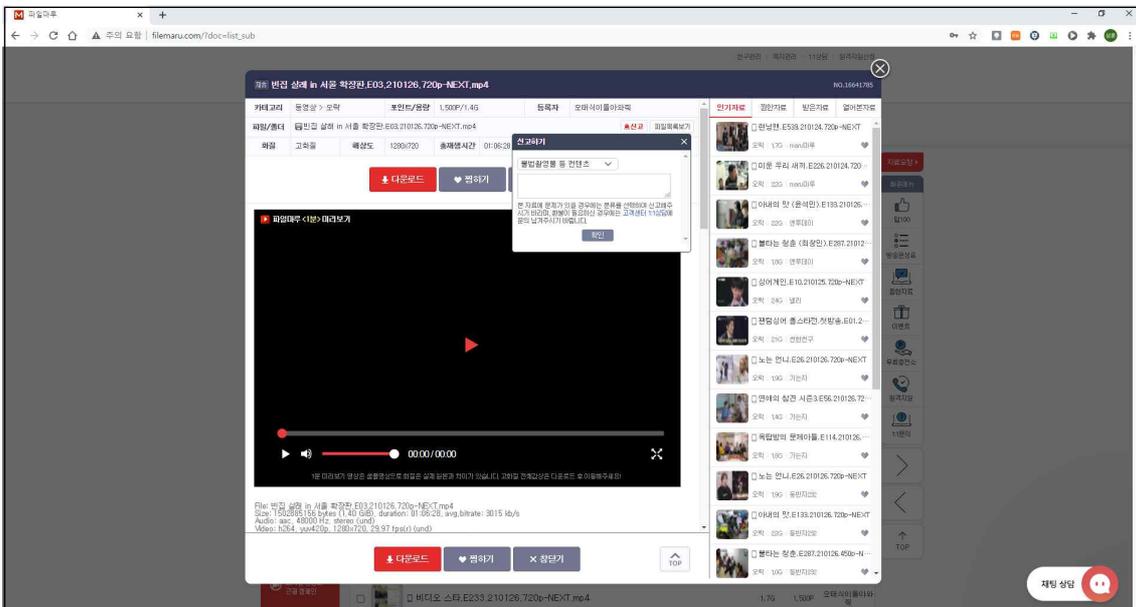
○ 청소년 유해물 표시 및 접근제한 실시 : 2020 ~ 현재

▶ 청소년 유해물 표시 및 접근제한 실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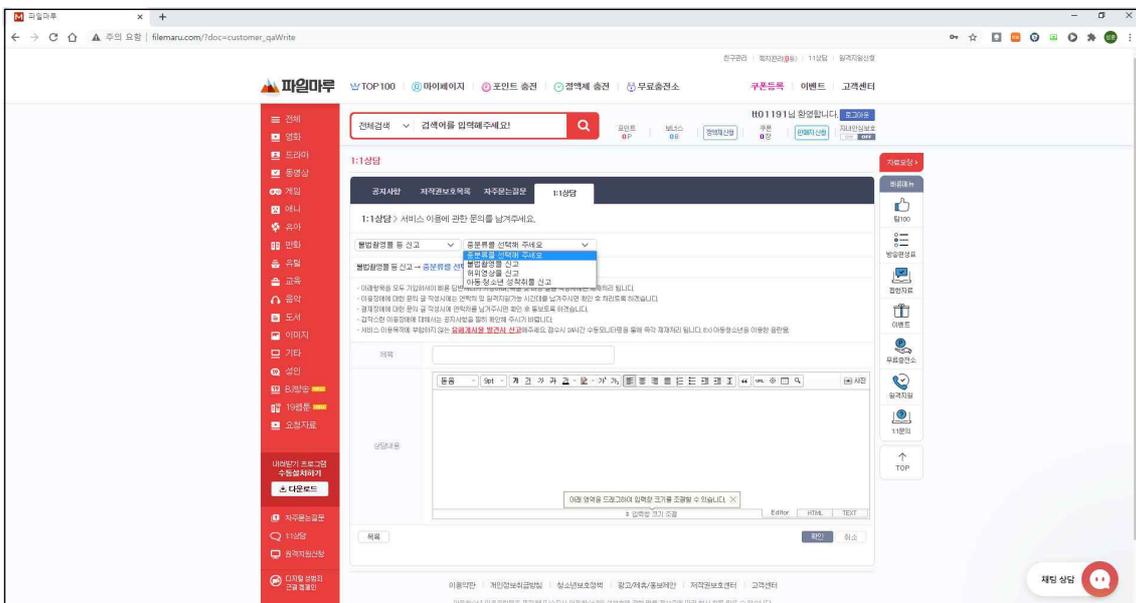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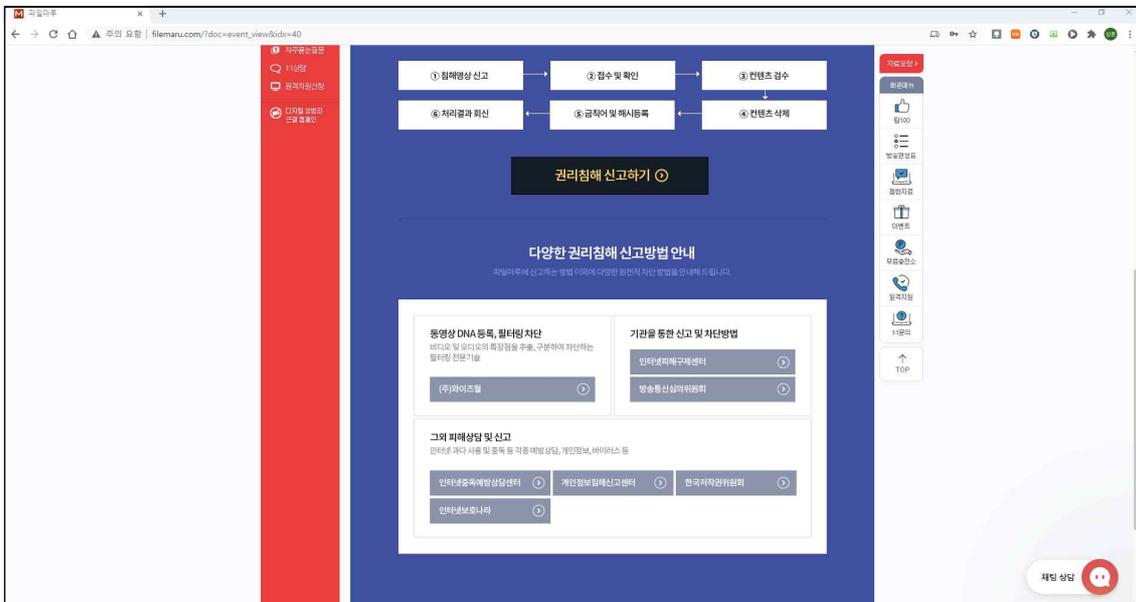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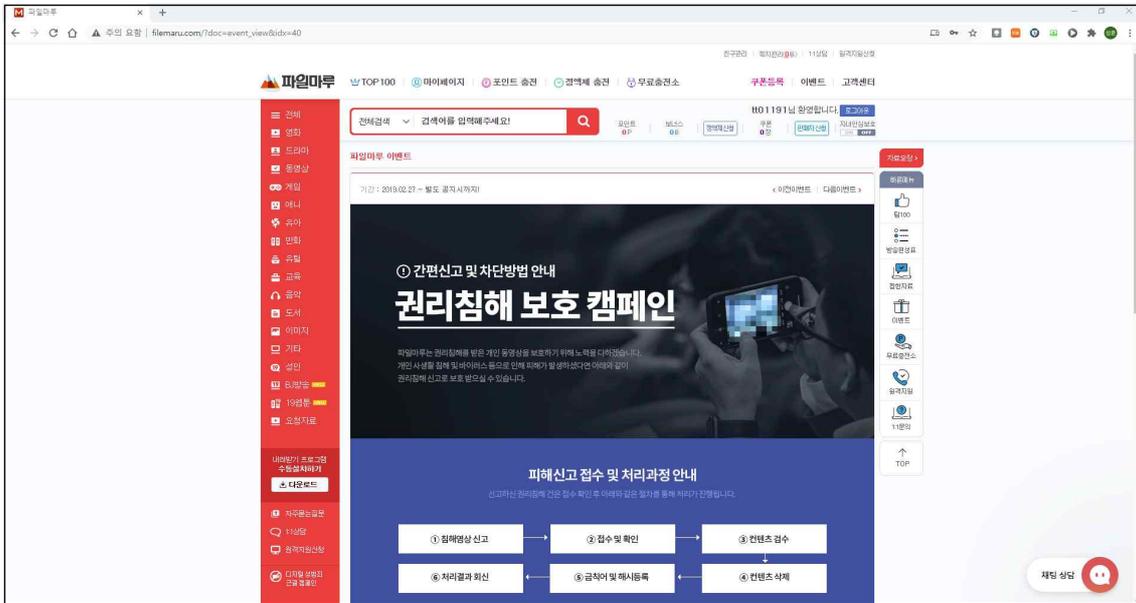
○ 불법촬영물 등 신고 안내 온라인 페이지 운영 : 2020 ~ 현재

▶ 게시물 등록정보 내 신고하기 기능 제공



▶ [권리침해 신고하기] 바로가기 기능

http://www.filemaru.com/?doc=event\_view&idx=40





### 3.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

○ 2020.12.10. ~ 31. 신고접수 및 처리건수 없음

구분	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계	
신고 접수	신고·삭제 요청인	피해자 등											0	0	
		기관·단체												0	0
		소계												0	0
	사유	불법촬영물												0	0
		허위영상물 등												0	0
아동청소년성착취물													0	0	
처리 결과	자체 삭제·접속차단	해당없음											0	0	
		해당없음												0	0
	방심위 심의요청	심의삭제·차단												0	0
		해당없음												0	0
		각하 등												0	0
	소계													0	0
	삭제·차단 사유	불법촬영물												0	0
		허위영상물 등												0	0
		아동청소년성착취물												0	0

### 4.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

○ (관련 규정) 이용자보호 계획서 內 불법촬영물 신고 접수 및 처리 계획

▶ 피해접수 처리 흐름도



○ (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대한 절차)

- 가. 사업자의 사이트내에 “불법촬영물등 신고센터”를 만들어 사업자 대표이메일을 통해 불법촬영물등을 사용자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. 신고센터를 통하지 않고 1:1상담하기 게시판 및 고객센터 (1522-0576)를 통해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게 조치한다.
- 나.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 있을시 유통방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, 운영자가 직접 다운받아 불법 촬영물등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제재조치 한다. 단, 확인·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.
- 다. 해당 게시물을 등록한 전송자(판매자)는 경고쪽지를 보내고, 동일한 불법촬영물등 유포자일 경우 경고 누적 3회 이상이 되면 판매자 자격을 박탈 처리한다.
- 라. 해당 게시물은 해쉬값 차단 조치를 통하여 해쉬값으로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위반콘텐츠 조치 및 업로드 중단 조치를 통해서 사이트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.
- 마. 신고자에게 해당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결과를 회신한다.

○ (기타 운영관련 사항)

<p>가. 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한다.</p> <p>(1)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를 위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시스템이 항상 운영될 수 있도록 일일 점검과 관련 인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</p> <p>(2)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기준에 따라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게시물은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재한다.</p> <p>(3)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사이트에 장착된 청소년 유해 필터링과 유해매체물에 대한 표기를 하고 있으나 필터링을 피하거나 매체물 표시 등의 규정을 어기며 불법촬영물등을 등록하는 전송자를 추리고 제재조치하기 위해 전담요원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한다.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물은 주기적으로 출력하여 문서로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며, 자동으로 차단되는 유해물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차단된 리스트를 문서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.</p> <p>나.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의 운영·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, 3년이상 보관한다.</p> <p>디. 불법촬영물 등 유통 신고서 및 해당 결과에 관련된 문서를 3년 이상 보관한다.</p> <p>(1) 신고접수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처리 결과 대장을 만들어 처리한다.</p>
--

**5.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**

구 분	정	부
성 명	송후인	김성훈
부 서	총괄	운영팀
직 책	부장	대리
지정일	2020. 12. 18.	2020. 12. 18.

**6.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교육**

구 분	교육일	교육명	참석자	시간	교육기관
교육실시	2020.12.18.	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제도 안내	전직원 11명	2시간	자체교육
교육실시	2020.12.18.	불법촬영물 신고 시 처리 방안	운영팀 5명	2시간	자체교육